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적용시한 만료(1991. 12. 31)

○ 목 적 :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

나. 주요골자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태양열 난방주택의 건축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민귀식)

- 주거용 건축물중 난방을 요하는 연면적의 3분의1이상에 해당되는 집열판을 지붕위에 설치하고 그 집열판을 통해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 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용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과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